「경찰공무원(순경) 시험대비」

경찰학개론 모의고사 및 해설(4)

| 한상기 교수 | 박문각남부경찰학원

16. '재난경비'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경찰은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 주무부서로서 임무를 수행한다.

② 재난상황실은 지휘체계 및 전파체계 확립, 신속한 초동조치, 인명구조 및 재산피해 방지, 초기에는 우선 동원 가능한 경력 출동을 목적으로 한다.

③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무총리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경비국장 또는 지방청장 ·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, 주의단계부터 재난상황실을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심각단계에서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16. 【정답】 ② ♣ 난이도 하

【해설】 경비경찰

① (X)–경찰은 **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지원기관**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경찰의 재난경비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.**(재난관리 주무부서는 소방방재청)**[▶경찰이 재난관리 주무부서(X)](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7,8호)<13경간 · 12.2채용>

② (O)–재난 상황실 설치 목적

③ (X)–**대통령령**이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**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**되는 경우에 대통령이[▶국무총리(X)] **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특별지원**을 할 수 있다.(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)<03승진, 12.3채용>

④ (X)–경비국장 또는 지방청장 ·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, **재난구분**(관심–주의–경계–심각단계)**에 상관없이 재난 상황실이 설치·운영될 수** 있다.[▶주의단계부터 설치 · 운영(X)] 다만, **심각단계에서는 반드시 설치**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(경찰재난관리규칙 제9조 제2항)<15 · 17승진>

17. '어린이 통학버스'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어린이통학버스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조 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)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"어린이통학용버스"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내리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가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.

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추월하지 못한다.

17. 【정답】 ③ ♣ 난이도 하

【해설】 교통경찰

① (X)–어린이통학버스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조 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)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**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**하고 **신고증명서를 발급**받아야 한다.[▶허가를 받아야(X)](법 제52조 제1항)<13.1채용>

② (X)–**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**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내릴 때에는 **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** 한다.[▶하차하여(X)](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)<13.1채용>

③ (O)–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.

④ (X)–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**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**.(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) <13.1채용>

18. '정보배포원칙'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㉠ 정보배포원칙에는 필요성, 적시성, 적당성, 타당성, 보안성이 있다.

㉡ 정보배포 원칙 중 보안성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알려야 하고, 알 필요가 없는 대상에게는 알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(차단의 원칙)과 관련된다.

㉢ 적당성은 정보는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적당량이 배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.

㉣ 정보배포 원칙중 적시성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포하였으면, 배포된 정보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는 그 기관에 계속 배포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.

① 1개 ② 2개
③ 3개 ④ 4개

18. 【정답】 ① ♣ 난이도 상

【해설】 정보경찰

㉠ (X)–정보배포원칙 : 필요성, 적시성, 적당성, 계속성, 보안성.

㉡ (X)–필요성의 원칙 : **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만** 알려야 하고, 알 필요가 없는 대상에게는 알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(차단의 원칙)이다.<10승진 · 04채용> / 보안성 : 정보의 누설을 막기 위해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원칙[▶필요 여부를 떠나 다수에게 배포되어야 한다는 것(X)]<10 · 15승진 · 11.2채용>

㉢ (O)–적당성<11.2채용>

㉣ (X)–계속성 :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포하였으면, 배포된 정보와 관련된 **새로운 정보는 그 기관에 계속 배포해 주어야** 한다는 원칙[▶적시성의 원칙(X)]<15승진 · 11.2채용>

19. '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'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(2021. 6. 9 시행법령기준)

①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.

②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,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 중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자를 포함하는 결정제외대상자에 대해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다.

③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 제외사유로 '항공기 납치, 마약거래, 테러,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,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, 위장탈출 혐의자,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' 등이 있다.

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직업알선을 하여야 한다.

19. 【정답】 ③ ♣ 난이도 중

【해설】 보안경찰

① (X)–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**국가정보원장**[▶통일부장관(X)]**이**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지체 없이 **통일부장관**[▶국가정보원장(X)]**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**하거나 알려야 한다.(제8조 제1항 단서)<15 · 19경간 · 19.1채용>

② (X)–결정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[▶결정하지 아니한다.(X)](제9조 제1항)<19경간 · 18 · 19 · 20승진 · 18.2채용>

③ (O)–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<19경간 · 18 · 19 · 20승진 · 18.2채용>

④ (X)–**통일부장관은** 보호대상자에게 추가지원, 정착금 지급, 교육지원, 의료보호 등 **각종 지원을 제공할 수** 있고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직업을 알선할 수 있다.[▶희망할 경우 직업알선을 하여야(X)](법 제16조, 제17조 등)<11승진 · 09채용>

20. '내외국인의 출 · 입국'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(O, X)가 바르게 된 것은?

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목적, 형사재판, 형집행, 벌금 · 추징금, 세금미납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.

㉡ 내국인이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,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2개월 이내에 출국금지가 가능하다.

㉢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.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㉣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.

㉤ 유효한 여권 또는 사증 없이 입국한 사람,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, 지방출입국 · 외국인 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상륙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등은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한다.

① ㉠(X) ㉡(O) ㉢(X) ㉣(X) ㉤(O)
② ㉠(O) ㉡(X) ㉢(X) ㉣(O) ㉤(X)
③ ㉠(X) ㉡(X) ㉢(O) ㉣(O) ㉤(X)
④ ㉠(O) ㉡(X) ㉢(X) ㉣(X) ㉤(O)

20. 【정답】 ② ♣ 난이도 중

【해설】 외사경찰

㉠ (O)–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<17승진 · 14.2채용>

㉡ (X)–소재를 알 수 없어 **기소중지,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, 3개월 이내**에 출국금지가 가능하다.(제4조 제2항 제1호)<13승진 · 17.1채용>

㉢ (X)–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이 **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**에는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**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** 한다. 수사기관이 **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**에도 또한 같다.[▶6시간 이내(X)](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제4항)<21.1채용>

㉣ (O)–형선고 관련 강제퇴거 대상 : **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**된 사람[▶벌금이상(X), ▶출국정지사유(X)]<14.1 · 2채용>

㉤ (X)–강제퇴거사유[▶입국금지사유(X)]<02승진 · 05 · 08 · 10 · 14.1채용>

※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(www.pmg.c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고시기획 INEWS www.gosiplan.com